

#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건의

일자 : 1994년 9월 23일자

대상 : 관련부처

## 1. 입법예고(안) 개요

1)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한 시행규칙(총리령)

[법 제15조 제1항]

①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입법 예고(안) 주요내용

○ 동시행규칙 제9조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 등)

① 항 : 용적이 3만cm<sup>3</sup>미만인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 전면 사용금지

② 항 : 용적이 3만cm<sup>3</sup>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 연차별 감량화 기준 제정근거 마련

○ 동시행규칙 부칙

③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 기한) : 용적 3만cm<sup>3</sup>미만인 가전제품의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의 사용규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

## 2. 외국의 사례

전세계적으로 합성수지 완충재 사용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법규는 없으며 선진국의 경우도 회수시스템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다.

또한 업체에 자율적 절감을 권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포장쓰레기 방지법에 의해 DSD에서 포장재의 부피에 따라 일정금액의 회수비용을 생산자 및 판매자, 수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성에너지 리사이클지원법에 의해 재생, 재활용을 위한 회수처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SOC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3. 규칙 개정에 따른 건의 사항

소형 전자제품에 대한 합성수지 완충재 사용 금지는 시기상조라 생각되며 선진국 처럼 감량화의 적극적 유도, 재활용의 확대, 회수 의무화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후 대체 포장재가 충분히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필요에 따라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사용중인 EPS의 재활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우선 EPS 회수, 재활용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가전업계 역시 제품 재활용 사전평가(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관련 지침서)를 통해 감량화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아 '95년 1월 1일부터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포장용 완충재 사용 금지조치는 업계에 혼선과 불필요한 비용 소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동규칙이 입법화 되더라도 가전제품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제품과의 규제 동시적용,

정부 주도하의 대체재 개발활성화, 유통품질 안정을 위한 국내 물류시스템 정비 등 제반여건에 대한 정책을 강구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대형제품의 연차별 감량화기준 제정시 업계 의견수렴과 함께 다음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92년 환경저 고시 발표이후 각 업체별로 감량목표를 수립, 활동하고 있으며 감량목표치 설정이 기업마다 차이가 있고 활동결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 감량기준을 설정할 경우 의욕적 활동을 추진한 업체는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대체재 개발이 활성화 되지않은 상태에서의 지나친 감량기준은 유통품질 불안정 발생 등 기업경영손실 우려가 높다.

향후 사용되는 완충재가 합성수지 재질이 라도 재생 재활용 가능성이 입증될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 4. 검토의견

현행	입법예고(안)	건의안	사유
제9조(가전제품의 포장용완충재의 감량화등) ①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는 용적이 3만cm <sup>3</sup>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가전제품의 포장용완충재의 감량화등) ① ……용적이 3만cm <sup>3</sup> 미만인 가전제품의 포장재로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외의 완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적이 3만 cm <sup>3</sup> 이상인 가전제품의……………	제9조(가전제품의 포장용완충재의 감량화등) ①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의 완충재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펄프성형재, 골판지 지지방식등 대체완충재는 EPS에 비해 습기, 복원력, 작업성, 가격 등에 있어 불리하며 유통중 제품 파손량 급증 우려</li> <li>-EPS의 경우 패기시 매립지연한 감소면에서는 그 사용이 지양되어야 하니 대체 완충재 사용시에는 대규모 산림훼손 등 역효과 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EPS가 회수만 되면 전량 PS 등으로 재활용 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해볼때 대체완충재 사용이 과연 환경적합형인 것인지 의문</li> <li>-현재 물류비 원가절감을 위해 기업 스스로 감량화 노력중이므로 과대포장소지가 없으며 「한국발포스티렌 재활용협회」와 가전업체가 회수, 재활용방안 협의 중임</li> <li>-대체 완충재에 대한 사업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전업체에 포장용완충재(EPS등)의 사용을 전면금지 시킬 경우 수급, 품질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며 또한 수입품의 경우 UR과 더불어 선진사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면 동법규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만을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li> </ul>
제9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는 환경처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전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완충재를 감량화 하여야 한다	제9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는 ……년차별 감량화기준에 ……	제9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이상 제조, 수입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자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년도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회장(이하 이조에서 "진흥회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고, 진흥회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감량화 실적과 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PS대체제로서 Pulp Mouldd의 경우 가격 대비 원가가 3배 상승되며 설비교체 및 자기구조에 따른 수공정에 의해 가전업체에 1000억원 상당의 부담을 주어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물가안정화 시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아니라 대체재 생산업체에 따르면 수급면에서 일시적인 수요충당이 불가한 것으로 조사됨</li> <li>-현재 우리업체는 각 업체별 제품별로 설계단계부터 포장용완충재 감량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감량화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은 혼선을 초래할 뿐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li> </ul>

현행	입법예고(안)	건의안	사유
부칙	부칙	부칙	
③(가전제품의 포장용원충제의 감량화기한)	③(가전제품의 포장용원충제의 사용규제)	③(가전제품의 포장용원충제의 사용규제) [삭제]	-제품 신모델 개발일정(10개월이상)을 보더라도 포장용원충제 감량화는 중·장기적 추진과제로서 감량화 기한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 -포장용원충제의 감량화·재활용 기술의 확보, 회수체계의 구축 및 환경적합형 대체포장재 개발 완료후 사용규제함이 바람직할 것임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의 포장용원충제의 감량화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이 3만㎤ 미만인 가전제품의 합성수지재질의 원충제의 사용규제는 1995. 1. 1일부터 적용한다		

## 대정부 건의 ②

# 가전제품 재활용 사전평가 기준서 검토 결과에 대한 건의

일자 : 1994년 9월 22일자

대상 : 환경처

### 1. 건의 내용

우리 가전업체는 “제1종 지정 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대한 고시 이전에 각사 품목별로 제품 재활용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동고시 시행에 따라, 본회를 중심으로 가전사가 실시 중인 평가서를 근거하여 실제 수행 가능한 항목 및 기준을 도출하여 제품 재활용 사전평가 기준서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코자 하며 추후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동평가제도에 대한 규제중심의 행정보다는 이 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가 우수한 제품의 기업에 대한 Merit System의 도입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고시 별표의 사전평가 내용은 일본 “가전제품협회”의 제품 Assessment Manual로써

일본에서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업체는 없으며 법적인 강제이행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고시 별도의 사전평가 내용은 일종의 Guideline으로 하되 세부 이행항목 및 평가기준은 업계 자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제품의 수명연장 대책이나 부품의 표준화평가, 재료의 통합화 평가 등은 일본의 경우 수년간 협의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국내에서 근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것은 제품특성, 경제성 및 국내 기술수준상 무리로 보며, 동평가제도가 시행초기인 만큼 우리 업계의 평가 기준서를 적극 반영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2. 일본의 제품 Assessment 실시 현황

○ 제1종지정제품 : 에어컨, TV, 냉장고, 세

탁기('91. 10월지정)

○ 제품 Assessemnt Manual 제시 : 가전 제품협회

○ 제품 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 : 제조업자가 제품의 안정성, 내구성 등을 감안하여 제품 또는 제품군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

○ 제품 Assessment 실시방법 : 제조업자가 자사제품 Assessment 실시규정을 책정하

여 실시하고, 자사 내 동제도 실시 책임자를 두어 관리 및 그 기록의 보관을 담당케 함

### 3. 사전평가 기준서 내용중 일부 제외 사유

우리 가전업계는 추후 평가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의 수정·보완 및 기술수준 향상에 보조를 맞추어 고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제외사유
제품의 감량화	○사용재료의감량평가 ○부품의 감량화 평가	○기준서 1항 ①에 해당 ○불량부품 발생소지가 있으며 부품의 감량화평가보다는 부품수감소 평가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재활용을 위한 재질개선	○복합재료 사용평가	○원가절감차원에서 기업역시 선호하고 있으나 복합재질부품 등의 특성상 실현이 어려우며, 제자원화를 향상이라는 근본취지상 좌목의 평가내용은 기준서의 재활용 기능성평가항목에 포함됨
분해처리의 용이성 (파쇄 등)	○제품, 부품등의 비탄력성 평가 ○파쇄되지 않는 부품의 분해분리성 평가	○평가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하며 이 사항은 향후 기간을 두어 추진할 과제임 ○기준서 3항 ① 또는 ②에 해당
분해처리의 용이성	○부품의 분해분리성 평가 ○재료의 분리성 평가 ○기타 처리용이성 평가	○기준서 2항 및 3항 ①의 평가항목에 포함되며, 고시의 평가기준 내용은 국내 기술수준 등 제반여건상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그 추진정도에 따라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며, 현재 실행가능성도 없는 사항을 평가 기준으로 정해 시행코자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제외사유
선별분류의 용이성	○재료의 통합화 평가 ○부품의 표준화 평가	○제품 또는 부품특성상 동일재료로 통합하기 어려우며, 동일재료로의 표준화 등은 제품 결함발생 및 막대한 투자비용이 발생되므로 기간을 두어 추진할 과제임 ○기준서 4항 ①에 포함
회수운반의 용이성	○회수운반의 용이성 평가	○기준서 5항 ①에 해당 ○분해분리후의 부품 운반용이성에 최종 처리업체의 시설·규모 등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기준 설정이 어려움
기 타	○제품 수명연장 대책 ○고장 및 소모성부품 대책	○좌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하며 각사에서 제품의 감량화 또는 분해처리의 용이화를 위해 각종 부품에 대한 강도가 고려되어 설계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쉽게 교체가 가능한 구조설계를 함으로서 제품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항목 평가는 업계 자율에 맡기되 그 평가기준은 추후 강구할 계획

## 용어해설

### 리파이낸싱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조달하는 차입금. 막대한 규모의 부채문제로 시달리는 채무국 또는 채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의 일환으로 제공된다. 기존 채무를 감당치 못해 리파이낸싱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리파이낸싱은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적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 보통 선진국의 우량 차입자중 상당수는 금리가 하락세를 유지할 때 은행간의 경쟁을 이용, 기존의 고금리 차입금을 상환하고 이들 금리가 보다 낮은 차입금으로 대체한다.